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329

발의연월일: 2024. 8. 29.

발 의 자 : 임광현 · 황정아 · 박민규

오기형 • 복기왕 • 박지혜

오세희 • 허성무 • 강준현

이해식 • 박홍배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며, 예비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면기획재정부장관이 총괄명세를 작성하여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을 승인을 얻어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결산과함께 예비비 사용 내역을 심사하여 승인하고 있음.

그러나 예비비 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정부가 사용한 예비비 명세서를 국회가 다음 연도에 승인하도록 하는 절차 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권한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로 예비비사용명세서 제출 요구를 하는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이를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예비비사용명세서의 제출 요구)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회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그 의결로 예비비사용명세서(예비비 사용 이유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제출 요구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예비비사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비비사용명세서의 제출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2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52조의2(예비비사용명세서의
	제출 요구) 각 중앙관서의 장
	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그 의결
	로 예비비사용명세서(예비비
	사용 이유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제출 요구
	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비비사용명세서를 제출하여
	<u>야 한다.</u>